

기안용지

(전화: 713-6156)

시행상
특별취급

문서번호
문서번호

법무 02424

보통 기간

정기 5일

10. 5. 3. 1.

수신처
보통 기간

정기 5일

기한일자

1991. 3. 14.

보
부
서
장

전
경

보
국
회
방
법
률
법
률

전
경

법
률
법
률

전
경

기안부인자

법제 계획

713

성
기
회

기
관
회

기
관
회

기
관
회

기
관
회

기
관
회

기
관
회

기
관
회

기
관
회

기
관
회

713

713

분
부
서
장

경
기
회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713

공무원연금세율특별시대점운영규정증개정규정

발령

(제 1 앤)

수신처: 내부설계

제 목: 같은 것

1. 공무원연금세율특별시대점운영규정증개정규정

을

기율특별시 대체 내부관리규칙 제 39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시

보에 개재 명령하고자 합니다.

첨 부: 별첨안 1부.

(제 2 앤)

수신처: 공보판

제 목: 차보 개개

1. 별첨 공무원연금식을 특별시 매점운영규정 중 개정규정을

차보에 개개 발령할 것.

첨 부: 서울특별시 운행 제 713 호 1부. 풀.

(제 3항)

수 청: 총무과장

제 주: 운행 바탕

1. 총무01310-173 (91. 3. 13.) 호와 패련임.

2. 공무원연금식을 특별시 매점운영규정 중 개정규정을

차보에 개개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첨 부: 서울특별시 운행 제 713 호 1부. 풀.

1 - 2

002

~~서울특별자치~~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대경운영규정총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1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이재

인

공무원 연금 서울특별시 매점 운영규정증 개정규정

공무원 연금 서울특별시 매점 운영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매점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증 "공무원 연금"을 삭제한다.

제2조증 "공무원 연금 서울특별시"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운영자금) 매점운영을 위한 기본운영자금은 매점 운영실적
에 의한 임여금으로 한다.

제4조 ②항증 "내무국장"을 "총무과장"으로 "총무과장"을 "서무
계장"으로 "본청과장 및 주무계장급"을 "본청계장 및 6~7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증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7조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간사는 총무과 소속 6~7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별표2>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급기준액

- 1) 판매원: 지방 고용직공무원 1종에 준한다
- 2) 창고관리 및 상품운반원: 지방 고용직공무원 2종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분류기호 문서번호 | | 기안용지 (전화: 6245) | 시행상 특별취급 |
|---|-------------------------|--------------------|------------------------|
| 보존기간 | 영구·준영구. 10. 5. 3. 1. | 시장 | |
| 수신처 보존기간 | | | |
| 시행일자 | 91. 3 | | |
| 보 조 기 관 | 부시장 전경 내무국장 총무과장 | 협 조 기 관 | 서통재 주40 법무담당관심사필 |
| 기안책임자 | 박우병 | | 발송인 |
| 경 유 수 신 찰 조 | 각안참조 | 발 신 명 의 | |
| 제목 | 공무원연금 서울특별시 매점 운영규정 개정 | | |
| (제1안) | | | |
| 수신 : 내부결재 | | | |
| 제목 : 같은 건 | | | |
| 1. 매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2.3.31. 훈령 | | | |
| 제570호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서울특별시 매점의 운영규정을 | | | |
| 별첨 "안"과 같이 개정고자 합니다. | | | |
| 첨부 : 공무원연금 서울특별시 매점 운영규정(안) 1부. 끝. | | | |
| (제2안) | | | |
| 수신 : 법무담당관 | | 7-6 | |

제목 : 강 울

1. 공무원연금 서울특별시 매점 운영규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무원연금 서울특별시 매점 운영규정증 개정규정(안) 1부. 끝.